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2. 9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6년 1월 19일
- 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2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상인의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·상품화 지원, 소통·교류 및 상생협력 활성화,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, 홍보 및 평가·표창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청년상인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, 평가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안은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의 청년 창업 지원 의무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의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(區)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검토 결과

-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,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, “청년상인”의 정의 기준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인용하여 명확히 설정함.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, 협력체계 구축,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.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한 “2024년 기준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”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주의 평균 연령은 60.7세로 나타났다으며, 본 조례안의 정책 대상인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은 2024년 기준 전체의 3.8%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이는 지속가능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유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.
- 이러한 배경 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(재)전통시장육성재단을 청년 상인 육성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상인 교육지원, 도약지원, 판로지원,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, 「청년기본법」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특히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에 대하여 △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, △교육,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, △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, △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△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

육, △창업 컨설팅 교육, △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, △소통,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사업 등 주요 내용을 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,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법체계상 정합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1. 19.

발 의 자: 이성수 · 정선희 · 유승용
우경란 · 김지연 · 전승관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청년상인의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·상품화 지원, 소통·교류 및 상생협력 활성화,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, 홍보 및 평가·표창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청년상인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, 평가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
바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사.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아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청년기
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상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자
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청년상인 육성계획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계속하여 체계적으

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상인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
2.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3.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4.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
5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청년상인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
2.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교육
3.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
4. 청년상인 간 소통, 교류 활성화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

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원사업의 평가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사업 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
2.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에 관한 사항
3.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·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
제10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·관·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·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